

김웅 / 4월 / 기초GS / 8회									
수강번호	문제 1	문제 2	문제 3	문제 4	문항 총점	석차	상위%	가독성 평점	응시인원
558128	20	14	0	0	34	1	4.17%	7	24
556408	18.5	13.5	0	0	32	2	8.33%	6	
558126	18.5	13	0	0	31.5	3	12.50%	4	
559484	19	12.5	0	0	31.5	3	12.50%	4	
548865	19	12	0	0	31	5	20.83%	7	
558091	16	14	0	0	30	6	25.00%	7	
559650	19	11	0	0	30	6	25.00%	4	
556213	18	11	0	0	29	8	33.33%	5	
556214	18.5	10	0	0	28.5	9	37.50%	6	
558759	16.5	12	0	0	28.5	9	37.50%	4	
559777	16.5	12	0	0	28.5	9	37.50%	5	
559326	17	11	0	0	28	12	50.00%	7	
556418	19	8	0	0	27	13	54.17%	6	
557914	16	11	0	0	27	13	54.17%	4	
558101	14.5	12	0	0	26.5	15	62.50%	5	
559390	16	10.5	0	0	26.5	15	62.50%	5	
556483	14	12	0	0	26	17	70.83%	7	
556205	15	10.5	0	0	25.5	18	75.00%	4	
557844	14.5	11	0	0	25.5	18	75.00%	5	
559740	17.5	8	0	0	25.5	18	75.00%	5	
558672	17	8	0	0	25	21	87.50%	5	
559649	16	9	0	0	25	21	87.50%	5	
556219	17.5	6.5	0	0	24	23	95.83%	4	
557843	12.5	1	0	0	13.5	24	100.00%	3	

<b>김웅/4월/기초GS/8회/1번</b>	<b>채점자</b>
	<b>이정은</b>

**1.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**

**(1) 설문1**

디자인보호법 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일반론 느낌으로 빈출되는 유형입니다. 조치별로 목차 분설 및 조문 병기가 중요합니다.

다들 잘 아는 내용이라 너무 힘줘서 쓸 필요는 없지만, 점수를 얻어갈 수 있도록 조문 누락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**(2) 설문2**

결론을 맞추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합니다. 판례와 사안포섭으로 구성하면 됩니다. 대체로 잘 쓰셨습니다!!

**(3) 설문3**

유사판단은 실익 없으며 / 쉽게 창작이라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, 소권범 인용으로 마지막 결론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느낌을 주면 답안인상이 좋습니다. 인용까지 결론 낸 답안은 많이 없었습니다.

**2. 소결**

4회와 비교할 때 다들 답안구성이 좋아졌음이 느껴집니다.

판례암기 및 조문병기 신경쓰고, 문제에서 묻는 바를 마지막에 결론 지어주는 것만 신경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
<b>김웅/4월/기초GS/8회/2번</b>	<b>채점자</b>
	<b>이정은</b>

**1.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**

**(1) 설문1**

문는 바에 비해 분량이 커서, 이의신청관련해서 일반론 많이 써줘야합니다. 다들 잘 쓰셨습니다.

**(2) 설문2**

답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. 답이 틀리게 되면 감점이 커서,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정확하게 내고 답안 작성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

**2. 소결**

배점이 클 때에는 법조문, 의의와 판례로 기본적인 내용을 쓴 후에는 사안포섭에서 목차를 나누어서 사안포섭 해주는 식으로 분량 늘리는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.

답안이 애매하게 넘치더라도 네모칸 밖으로 쓰기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써주는 것이 답안 인상이 좋게 느껴집니다.

줄 양쪽 끝을 채워서 써주시는 것이 답안이 딱 찬 느낌이 듭니다. 앞뒤로 너무 많이 띄우시는 분들은 신경써주세요!

다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입니다! 응원합니다.

[용어]

## I. 선행(1)

## 1. 전제

이 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자가 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들고 있으므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.

## 2. 조치 ① - 적극적권리법위확인심판 (법122)

## (1) 권리·조치

당사가 사이트 분쟁을 같이 신속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권리법위 소북에 대한 공적인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.

## (2) 확인의 이익 취제

피침해권이 실제 침해하고 있지도 않은 디자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을 구한 경우 심판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사가 사이트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 없다고 본다.

## (3) 사안

디자인 등록을 받은 무은 침해 행위를 하는 선의상대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## 3 조치권 - 민사적 조치

(1) 침해금지 청구

## 1) 의의·취지 (法 113①)

디자인권자 등은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.

## 2) 비밀디자인의 경우 (法 113②)

法 43①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한 디자인의 경우 그 디자인에 대해 지식재산차장으로부터 증명 받은 시연을 제시해 경고한 경우가 아니면 본 청구를 할 수 없다.

(2) 손해배상 청구

## 1) 의의·취지 (法 115①)

디자인권자 등은 고의·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로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 2) 비밀디자인의 경우 (法 116① 단서)

원칙적으로 法 116① 본문에 따라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족해되나, 비밀 디자인의 경우는 제외된다.

(3) 신용회복 청구

## 1) 의의·취지 (法 117)

고의·과실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권자의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그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.

## 2) 비밀디자인의 경우 (法 116① 단서)

아첨가지로 과실의 족해이 배제된다.

(4) ~~부당이득반환청구~~ (민법 741)

침해로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당사자 인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## 4. 조치 ㉓ - 행사적 조치

## (1) 침해죄 고소 (법 220)

고의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죄 고소를 할 수 있다.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.

## (2) 몰수 등 (법 228)

침해행위로 전한 물건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회복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.

## (3) 양벌규정 (법 227)

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침해행위 한 경우 법인과 그 개인은 행위자가 아닐에도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.

## 5. 조치 ㉔ - 침해금지 가처분 (민사중행법 300)

침해행위 한 자가 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.

10

## II. 식권(2)

1. 음제정 -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(法122)

특이 식에게 청구한 심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인데 해당 절차에서 식이 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자가 음제된다.

2. 특권의 항변 가능 사유

## (1) 신규성 총결의 경우

<sup>등록</sup>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안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들의 결합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등록 디자인의 무효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부정된다.

## (2) 창작비효이성 총결의 경우

등록 디자인이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무효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.

## 3. 사안 - 주장불가

식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 디자인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어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 하는데, 이는 무효의 항변 중 "창작비효이성 총결"인 등록 디자인에 대한 항변이다. 이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

서 주장할 수 없는 항변에 해당한다

4

## II. 설원(3)

### 1. 문제점 -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(法122)

이해관계인은 자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, 해당 절차에서 자유식시 디자인의 항변이 가능한지 문제된다.

### 2. 심판청구인적격 (法 122)

'이해관계인'만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하다. 설원의 경우 그은 무언으로부터 침해 경고를 본 것으로, 심판을 청구한 이해관계 있다.

### 3. 자유식시디자인 항변 가능 문제

대변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 디자인 또는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득의 견함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.

4. 사안

(1) 자유식시디자인 항변 기법

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권리범위 확인성판에서 자유식시 디자인 항변이 가능하다.

(2)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

1) 공통점

① 볼체, 배춧구 등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있다. ② 볼체가 원통형이다. ③ 조임볼트가 볼체 끝 부분에 링 모양으로 있고, 일직선 형태로 편평이 가하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다.

2) 차이점

① 볼체 외주면이 안쪽진 형상인지, 일직선 형상인지에 차이가 있다. ② 그로 인한 조임 볼트와 볼체 사이 단턱 형상에도, 연결 각도 측면에 차이가 있다.

3) 대비

'밸브 하우징'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밸브가 어떤 형상과 연결 구조를 가지는지가 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거나 가장 중요한 원리라 할 수 있다. 이 외에 곡률 등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원리가 아니어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비교대상 디자인 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

(가) 선별

은은 자유식시디자인 항변은 권리범위 속목을 부재할 수

있는 것이다. [결]

## [문제-2]

## J. 서문 (1)

1. 문제점 - 이의신청 (법 68①)

디자인 일부상사등록출원의 경우 부속한 권리가 등록될 여지가 커서 그러한 부속 권리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지연시키는 제도이다. 서문의 경우 이의신청 문건을 검토한다.

2. 이의신청 대상 여부 (적극)

## (1) 일부상사등록출원 대상

디자인의 형식에 따른 유품류 중 제 1류, 제 2류, 제 3류, 제 5류, 제 9류 (도장표기), 제 11류, 제 19류는 일부상사등록출원만 가능하다.

## (2) 사안

'식품스낵 케이스' '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'는 제 9류에 속하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.

## 3. 시기적 요건 만족 여부 (적극)

## (1) 시기적 요건

디자인권이 실재등록된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지난 날까지 가능하다.

## (2) 사안

디자인 등록공고일이 2026.5.1이므로 이의신청은 2026.4.25부터 2026.8.1까지 가능하다. 이의신청 할 때 이의신청서만 내도 시기적절한 것은 만족하므로, 만료일인 2026.8.1 이의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.

#### 4. 특허사의 기준

##### (1) 신규성 충족 (특 33① 각호)

선원의 경우 선행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신규성 충족으로 무효시킬 수 있다.

##### (2) 창작비용이성 충족 (특 33②)

실질 신규성 충족이 아니라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기에 창작비용이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.

#### 5. 결론

##### (1) 이의신청 이유 등의 불제 환원 (특 69)

만료일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 한 날 부터 30일인 2026.8.기까지 이유 등을 불제할 수 있다.

##### (2) 신건

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충족을 문제삼아 이의신청 할 수 있다.

II. 실용(2)

1. 유사 판단 범위

(1) 일반 원칙 사례

디자인 사이의 유사 판단시 디자인 전체로서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·구매자가 성리한 심이감을 느끼는지를 판단한다.

(2) 기본적 형상인 경우 사례

유사 판단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그 기능 및 해상 유지를 위해 안성되는 기본적 형상인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으로 유사 판단한다.

2. 사안 - 취소결정

甲의 등록디자인은 '식품 수납케이스'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안성되는 기본적 형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, 유사 판단시 이러한 형상은 주된 대비대상이 아니다. 그러나 공동점·차이점 판단시 선해 디자인과 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창작 부담이서 중점이 예상된다. 따라서 이의신청은 취소결정 노 것이다. [결]

가장

7

14  
- 아가 여비서